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법 등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한편,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의 규정 신설 및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 기준 명확화(안 제35조의7)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액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범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액을 제외하러

는 것임

나. 조정교부금 중복산정 방지(안 제36조의2)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 및 평가항목 규정(안 제46조)

주민참여 범위를 종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라.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안 제47조)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7. ~ 2020.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7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말한다) 적용 금액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삭제

3. 「지방세특별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 · 감면액

제36조의2제1항 중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를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
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
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
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제46조의 제목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을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공청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예산편성시”를 “예산과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문조사

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비과세·감면율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7제3항제3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율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
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입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
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u><신 설></u>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u>① 법 제28조의2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 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말한다.</u> <u>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 산액: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 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 서에 기재된 수납액</u> <u>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 세 특례를 말한다) 적용 금액</u> <u>② (현행 제1항과 같음)</u> <u><삭 제></u>
<u>① (생 략)</u> <u>② 제1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 세 · 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 <u>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u>	

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
(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
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하
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
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국가 정책적으로 지
원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과세·감면액

<신 설>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
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
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
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
(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
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하
다)

2. 삭 제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
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의 세액공제·감면액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
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
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
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
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
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
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
외한다.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
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
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
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
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
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
서 “예산과정”이라 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4.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공청회

2. 설문조사

3.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 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신 설>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평
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견수령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
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분되
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
수입으로 구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704